

경력직원 채용 시 경력환산기준표

인사규정 [별표 1의 2]

경력직원 채용기준

일반직

직급	채용 자격 기준
4급	1.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2. 국가공무원 6급으로 3년 이상 경력소지자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소요경력 최저 년 수는 [별표 1의 3]의 경력환산적용비율로 산정한 연수로 한다.

인사규정 [별표 1의 3]

경력환산기준표(채용기준 경력 계산용)

일반직

경력환산등급	A	채용할 직무와 동종의 직무경험을 가진 자			
	B	채용할 직무 외의 타 직무에 경험을 가진 자			
직 종 별 적 용 구 분	경력기간환산적용비율		100%	80%	50%
	국 가 공 무 원		A		B
	공 공 기 관		A		B
	국 제 기 구		A		B
	연 구 기 관			A	
	대 학 (원)			A	
	민 간 단 체			A	
	사 기 업 체			A	
	협 력 단 근 무 경 력		A		B
	국 별 ODA 전문가 경력		A		B
비고	1. 이 평정은 당해 직원의 경력을 평정함으로써 협력단의 경력으로 간주 환산하여 경력직 채용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음. 2. 기준에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력에 대하여는 해당직무, 기관의 규모나 성격, 근무내용 등에 따라 이 기준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함. 3. 경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환산율이 높은 일방만을 인정함. 4. 협력단 근무경력에는 기간제근로자, 해외사무소 청년인턴, 기타 청년인턴(인턴기자단, 연수모니터링 인턴), 봉사단 코디네이터, 개발협력 코디네이터, 해외봉사단 경력을 포함함. 5. 국가고시(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기술고시 등) 자격증 소지자에 한하여, 해당 자격증을 활용한 민간단체 및 사기업체의 지원 직무 유관 실무경력은 A등급(100%)으로 인정함.				

경력직원 연봉채정기준

보수규정 제10조(직원 연봉구성)

- ① 직원의 연봉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기본연봉
 - 2. 삭제 <2010.01.20.>
 - 3. 성과연봉 및 경영평가성과급 <개정 2016.05.02.>
- ② 직급별 연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수규정 [별표 2] 직원 연봉기준표 (2018년 기준)

<기본연봉>

(단위:천원)

직급	상한액	하한액
4급	64,664	38,670
5급	60,058	28,591

<성과연봉>

(단위:천원)

직급	상한액	하한액
4급	11,380	6,312
5급	10,194	4,663

- 직원이 공무원 경력이나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연봉 하한액에 경력연수*를 합산한 수치를 연봉으로 한다.

* 경력연수 인정 기준

1.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2. 법령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 법령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 적용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의 '호봉획정시 인정되는 공공법인의 범위'로 한다.
 3.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에서 근무한 실무경력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교육경력 또는 행정 실무경력
 5.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이수경력(기간에 따라 3년까지 인정)
 6.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그 이수경력(기간에 따라 2년까지 인정)
 7.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복무한 경력
 8.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해외봉사단원, 계약직 행정원, 전문가 활동경력
 9.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이사장이 따로 정하는 경력
- 상기 각호의 경력 또는 학력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경력연수가 높은 경력은 경력연수로 확정한다.(경력과 경력이 중복된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하여만 계산)